

수원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1나10766(본소), 2021나1077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출자이행금 지급 청구의 반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신동욱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

변 론 종 결 2021. 7. 21.

판 결 선 고 2021. 8. 18.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8가합28450(본소), 2019가합 13912(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2018. 5. 4.자 부동산지분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54,005,368원 및 위 돈 중, 161,612,171원에 대하여 2007. 1. 1.부터, 34,401,585원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4,697,472원에 대하여 2009. 1. 1.부터, 32,866,906원에 대하여 2010. 1. 1.부터, 31,663,400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1,788,486원에 대하여 2012. 1. 1.부터, 6,137,473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38,922,978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32,183,595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50,532,141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76,736,742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34,875,636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7,587,081원에 대하여 2019. 3. 1.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는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1쪽 16~17줄의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전체 조합원이므로 이 사건 소송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비록 원·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전체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의 정산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확정된 내역에 비추어 피고가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내용 등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고 볼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복형, 판사 허양윤, 판사 정현식

별지

부동산목록

1. 충청남도 예산군 J 대 3011㎡
2. 충청남도 예산군 K 체육용지 449㎡
3. 충청남도 예산군 L 대 79㎡
4. 충청남도 예산군 M 입야 26㎡
5. 충청남도 예산군 J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3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 시설 751.6㎡,
 2층 위락시설 1165.12㎡, 3층 위락시설 400.8㎡

